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91호 2009. 11. 19.

공 고

제2009-905호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인사발령

기능직 공무원 복직 4
 7급이하 인사교류 및 전보 4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905호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1. 19.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의 기준에 맞추어 법률용어를 수정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입법이 미비한 사항 및 수차례 일부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조문·가지번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개정 및 서식 정비
- 나. 수입증지의 종류를 19종에서 14종으로 조정 (안 제2조)
- 다.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권자를 구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 (안 제3조 제2항)

라. 상위법령(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조항(수입증지의 교환·환매)의 삭제 (舊규칙 제16조, 제17조)

- 판매인 계약서에 수입증지의 교환·환매 규정 포함

마.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소인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에 편입하여 신설 (안 제13조)

- 소인의 모형 규정에 관한 사항

- 소인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소인된 문서의 검열

3.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131-701, 전화 : 490-3341, FAX : 490-3652, E-mail :
koh0521@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재무과 (☎490-33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기능직 공무원 복직

2009. 11. 17.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허연숙	복직을 명함	행정국	기능 8급 지방조무원

7급이하 인사교류 및 전보

2009. 11. 18.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최경현	행정국 근무를 명함 (정책사업기획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2	염철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근무를 명함	행정국 (정책사업기획단)	지방행정 주사보
3	박원배	중랑구 전입을 명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 예천군	지방행정 서기